

의안번호	제 388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7월 일 (제 282 회)

**충청북도중 ·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09년 7월 2일

## 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7. 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1. 제안이유

특별장학생의 요건을 개정하고,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“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”로 (안 제2조제5호)

나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입법예고 : 생략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중·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호의 1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같은 조 제5호중 “5/100이내인 자로서 행동발달 상황이 “나”이상인 자”를 “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서식에 의한”을 “서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장학금 지급)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.

제6조(지급기간 등) 특별장학생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.

제7조(지급중지)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할 때
  2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
  3. 연간 출석율이 90퍼센트에 미달할 때
  4.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
  5.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
- 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중 “승계 선정할 수 있다. 장학생추천서를 [별지]와”를 “승계할 학생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추천서는 별지와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충청북도중 · 고등학교특별장학생 에관한조례</b>	<b>충청북도 V 중 · 고등학교 V 특별장 학생에 V 관한 V 조례</b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관내 중 ·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특별장학생의 요건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(이하 “특별장학생”이라 한다)는 중 · 고등학교의 취학 대상자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(중학교 제 1학년 학생에 한한다.)</li> <li>2.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 고사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(고등학교 제 1학년 학생에 한한다.)</li> <li>3. 자연과학, 예능, 체육 등에 특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교육기본법</u>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내 중 ·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특별장학생의 요건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(이하 “특별장학생”이라 한다)는 중 · 고등학교의 취학 대상자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(중학교 제 1학년 학생에 한한다.)</li> <li>2.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 고사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(고등학교 제 1학년 학생에 한한다.)</li> <li>3. 자연과학, 예능, 체육 등에 특</li> </ol>

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4.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

5. 승계자는 학업성적이 **5/100이 내인 자로서 행동발달 상황이 "나"이상인 자**

제4조(특별장학생의 선정) 중 ·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의한 특별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.

제5조(장학금 지급) ①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, 수업료, **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, 기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한다.**

②

제6조(지급기간등) ①특별장학생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**당해**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.

②

제7조(지급중지) ①특별장학생이 **다음 각호의 1에**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할 때
2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
3. 연간 출석율이 90%에 미달할

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4.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

5. 승계자는 학업성적이 **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**

제4조(특별장학생의 선정) 중 ·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따른 특별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.

제5조(장학금 지급)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, 수업료, **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.**

<삭 제>

제6조(지급기간 등) 특별장학생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**해당**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.

<삭 제>

제7조(지급중지) ①V특별장학생이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**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할 때
2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
3. 연간 출석율이 90퍼센트에 미

<p>때</p> <p>4. 다른 장학금을 받게된 때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5.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</p> <p>②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탈락자의 승계) 학교장은 장학생 중 탈락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승계 선정할 수 있다. 장학생추천서를 [별지]와 같이 한다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특별장학생의 관리, 장학금의 지급,</p>	<p>달할 때</p> <p>4.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</p> <p>5.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</p> <p>②V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탈락자의 승계) 학교장은 장학생 중 탈락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승계할 학생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추천서는 별지와 같이 한다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특별장학생의 관리, 장학금의 지급,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
--	---

관계법령 발취

□ 교육기본법[법률 제8915호, 2008. 3.21, 일부개정]

제28조 (장학제도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(장학제도)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

2.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,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